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89번
-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 (찬성의원 16명)
- 발 의 일 : 2021년 4월 2일
- 회 부 일 :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마을관리소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마을관리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마을관리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바. 마을관리소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2021. 4. 9. ~ 4. 16.)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 약 40%가 낮은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 중에 있어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 재생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자 발의된 것임.
- 주요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환수 등 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관리소”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실행하고,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p>3.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 (시장등의 책무)</p>	<p>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공간과 사업운영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주민은 누구나 마을관리소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p>
<p>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p>	<p>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시장은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목표 2.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대상지역 선정기준 3. 마을관리소의 설립형태, 조직과 운영 체계 4. 마을관리소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5.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6.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중간지원조직 연계·협력방안 7.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관련 계획 또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6조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2.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3.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p>4.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p> <p>5.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실행</p> <p>6.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p> <p>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제7조(지원신청)	<p>①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신청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p>
제8조(지원결정)	<p>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방법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9조(보고 등)	<p>마을관리소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10조(평가·포상)	<p>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제11조(재정지원)	<p>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관리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제12조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마을관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제13조(시행규칙)</p>	<p>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의 안전 관리와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지원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존의 마을활력소와의 중복 사업 및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되어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없을지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안 제4조)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관리소”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실행하고,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 ‘마을’에 대한 정의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의 정의와 같이 규정하여 조례상의 정의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장은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목표
 2.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대상지역 선정기준
 3. 마을관리소의 설립형태, 조직과 운영 체계
 4. 마을관리소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5.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6.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중간지원조직 연계·협력방안
 7.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관련 계획 또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설치·운영 목표와 대상지역 선정기준, 마을관리소의 설립형태와 조직·운영 체계,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주민 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다루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관련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제6호의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중간지원조직 연계·협력방안'을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0년 서울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최종보고서(서울특별시)'에 따르면 2020.4.1.~11.30. 실시된 삼양동 마을관리소 사업(로컬랩(Local Lab))을 통해 1년 단위의 공모사업보다 4년 또는 5년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기본계획)

-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음.

제6조(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2.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3.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4.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
 5.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실행
 6.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동 조항에서는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마을물류 등 단순한 주민 편의 제공 기능과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마을돌봄,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의제 발굴 등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 참여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안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마을관리소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기능인지 살피기 위하여 마을관리소를 앞서 설치·운영해온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사무소 등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기행복마을관리소

- 현재 17개소 운영중
- 사업예산 : 1개 소당 사업비 17,900만원
- 2019년 1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역특성에 따라 안전마을형(지역순찰, 안전마을), 지역재생형(도시재생업무) 주민자치형(생활도구 임대, 주민자치) 등으로 특화하여 운영중
- 주민수요에 기반한 시군 단위 신청 후 대상 선정(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선택 가능)
- 인력구성 :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채용되어 5명씩 2교대로 근무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3. 동네환경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역할

○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 2015년 5개소, 2019년 13개소, 2022년 20개소로 확대 예정
- 사업예산 : 143,000만원 (시:구=5:5)
- 2014년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선도구역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 2019년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인력구성 : 공공근로자(2), 자원봉사자(3), 사회복지사(5)

※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 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이하 “집수리 서비스”라 한다) 제공 및 지원
 2.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
 4.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5.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6.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
 7.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 마을지기사무소

- 현재 43개소 운영중(부산시 읍면동의 약21%)
- 사업예산 : 861,400만원 (순시비 671,400만원)
- 인력구성 : 상주인원 2명(마을지기: 관리사무소장 1명 / 만물수리사: 주택유지 관리서비스 1명)
-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주택 내 누수, 누전 등 긴급서비스, 교체 수리)
- 주민생활 편의 지원(무인발급기, 공구대여, 팩스, 복사 등)
- 자치구·군 공공근로사업, 종합복지관 사업 연계 추진
- 외부 자원 연계(자원봉사센터, 건축사협회 등 전문기관 연계)
- 초기 3년간 전액 시비로 지원, 지원 종료 후 구·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또한, 안 제6조제2항제2호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생활시설 관리’의 경우 현재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자치구의 주요 사무로 되어있는 기능에 대해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안 제6조제2항 중 제4호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사업’과 제6호의 ‘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제발굴과 실행 등’은 현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중복된 행정서비스 제공과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우려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오히려 집수리 등 주택관리, 택배, 주민 돌봄, 도시락 전달, 골목길 환경 개선 등과 같이 마을공동체사업과는 다른 특화된 중점기능을 확보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지원범위)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7. 마을공동체공간의 설치 및 운영
 8.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10.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나아가 마을관리소는 주민생활시설 관리 등 단순 주민 편의 제공 업무와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업무 등 폭넓은 각 기능에 대해 행정기관인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위탁·용역 사업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창출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지원신청, 지원결정(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는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지원신청)

- ①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신청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방법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8조에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보고(안 제9조)

제9조(보고 등) 마을관리소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는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받는 집행기관의 집행상황에 대해 의회의 점검과 관리감독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난 10년간의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들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 실적 및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마을관리소의 성과에 대한 홍보도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9조(보고 등) 마을관리소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정지원(안 제11조)

제11조(재정지원)

-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관리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안 제11조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되는데,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한 경비사용에 어려움이 없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마을관리소 운영 재원은 매년 증가하는 예산 부담에 의존하기보다는 초기 공공 지원으로 활성화 단계를 마친 이후에는, 보조금은 보충적 의미의 재원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참여주민들의 회비와 마을관리소가 시행하는 사업의 수익금 등 마을관리소의 운영에 따른 자원 조달을 통한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25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 최근 삼양동 로컬랩 시범사업을 통해 보여진 동 단위 협치 플랫폼과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 단위로 나타나는 마을관리 사업을 통해, 기존 주민센터와 찾동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관이 주체가 되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김 민 정